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
------	-----

제출년월일:2001. 1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기간을 90일로 개정.
- 나.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3. 참고사항

- 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불임.
- 나. 관계법령(근로기준법) : 불임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생 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u>90일</u>-----</p> <p>-----.</p>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강원 이룩하자'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 (033)249-2542 FAX)249-4022		총무과		과정 최용집		서무담당 손흥락		담당자 정범두	
문서번호	총무 12100-3157	선	과	장	지				
시행일치	2001.09.30 ( 3 )	일	일	자	시				
공개여부	공개	시	간	2001. 10. 04.	결				
수신	수신처 참조	수	번호	5148	재	담	담		
참조	자치행정·총무과장	처	리	과	자	치	행	정	과
제	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통보	담	당	자	공				
		심	사	자	람				
					심	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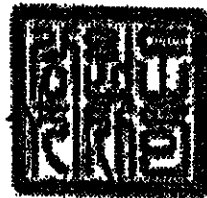
기각함함

1. 행정자치부 운영 12100 - 800(2001.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표준안에 의거 해당규정을 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01-07) 더(08-18)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1.11.1부터 시행한다.

※ 2001.11.1 이후 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의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신·구조분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u>90일</u>-----</p> <p>-----</p>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부칙 보완내용

공무 12100-3159, 2001. 9. 20 개정  
(~~행정처처부 문영12100-800, 2001. 9. 26 관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1년 11월 1일 이후 조례개정시에는 “2001년 11월 1일일부터”를 공포  
한 날 부터”로 함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근로기준법)

○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産前後)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여자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母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